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90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23년 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72,648	426,999	54,351
중소기업 금융지원	304,216	304,216	-
중소기업직접용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2,800	102,800	-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137	1,137	-
재무활동	68,427	122,778	54,351 (7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이자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22.12월)을 받은 금액임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합 계	372,648	426,999	54,351	합 계	372,648	426,999	54,351	
기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57,762	257,762	-	사업비	기금 용자금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102,800	102,8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0	2,770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137	1,137	-
예치금 회 수	70,767	125,107	54,340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41,349	41,34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기타수입	-	11	11	기본경비	5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오승백 (☎ 2133-5190)